

#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호		
건명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18. 8. 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심 경 석		

## I.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양성평등 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 단절여성들의 일자리 발굴·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018.12.31일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구분	소재지	규모	시설현황	비고
잠원·반포권역	잠원로8길38	1층 947.3㎡	강의실(7개), 강당, 사무실, 회의실 등	본원
양재·내곡권역	염곡말길9 느티나무센터 2층	2층 일부 212㎡	상담실(2개), 치료실(7개), 사무실 등	-분원- 서초심리 상담센터
늘봄카페 (3개소)	내곡도서관 서리풀광장 열린내곡문화센터	22㎡ 52.44㎡ 37.3㎡	카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 ○ 인력구성

계	대표	본부장	부장	대리	시설주임	조리사	사원
21명	1명	1명	4명	3명	1명	1명	10명

#### ○ 소요예산

2016년	2017년	2018년
850,000 (천원)	980,000 (천원)	1,685,000 (천원)

### 나. 주요위탁 내용

#### ○ 위탁근거

-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2

####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위탁기간 : 5년 이내 (2019. 01. 01. ~ 2023. 12. 31.)

※ 현 위탁현황

시설명	위탁법인	위탁기간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2016. 1. 1.~2018. 12. 31.(3년) ※ 최초위탁 2016. 1. 1.

○ 위탁업무

-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운영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 여성의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 여성과 가족의 갈등해소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각종 치료 및 상담
-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늘봄카페 운영
- 그 밖에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관련기관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II. 검토 의견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초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은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1991년 서초구립여성회관(방배로40)으로 출범하여 2017년 1월에 현위치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음.

### 2. 민간위탁 주요 성과

- ‘서초여성플라자’는 양성평등 관련 전문적인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요 성과를 살펴 보면, 2016년에는 ‘지역여성 권익 보호 및 복지향상 분야’에서 목표대비 실적은 143.6%로서 가장 높고, ‘문화 및 평생교육 분야’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낮은 79.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2017년에는 ‘커리어개발 분야’에서 155%로 가장 높고, ‘심리상담센터 분야’에서 99.5%로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총괄 달성률이 2016년에는 98.4%, 2017년에는 12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초여성플라자의 주요사업 실적 및 달성률>

연 도	대 분 류	목표 (연간 이용인원)	실적 (연간 이용인원)	분야별 달성율 (%)	총괄 달성율 (%)
2016년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교육	13,546	10,868	80.2	98.4
	문화 및 평생교육	109,487	87,217	79.7	
	지역여성 권익 보호 및 복지향상	2,009	2,886	143.6	
	지역복지 증진	26,116	28,392	108.7	
	상담 및 심리 치료	11,326	9,024	79.7	
2017년	커리어개발	9,843	15,260	155.0	124.1
	생애교육	78,300	81,637	104.3	
	지역사회협력	2,991	3,944	131.9	
	심리상담센터	7,524	7,486	99.5	
	기 타 (양성평등행사 등)	19,457	25,256	129.8	

### 3.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됨.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초여성가족

플라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기준에 부합됨.

○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함.
-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였으며,
- 위탁업무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 제3조(기능)에 규정된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운영 등 6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전문

경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초구에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회계, 인사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에 총 5건, 2017년에 5건이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Ⅲ. 참고자료

#### 1. 관계법규

#### 2.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위치도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관리·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 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2013.05.02.)
- 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1.11.1.)
-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3.05.02.)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1. 인적·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사고 현황
  6. 성과평가 자료 등

####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어린이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재활용센터 등 환경위생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영어센터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문화·체육 및 청소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공영주차장 등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및 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첨부2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위치도

### □ 지도



### □ 현장사진

